

■ 군위탁생규정 [별표] <개정 2024. 10. 29.>

반납액의 산정기준표(제12조제1항 관련)

구 분	반 납 액
1.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지급경비 전액
2.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지급경비 전액. 다만,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경비의 100분의 50
3.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	$\text{지급경비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가산월수} - \text{복무월수}}{\text{의무복무가산월수}}$
4.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	지급경비의 100분의 20
5. 제12조제1항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	지급경비의 100분의 50

비 고

- 가.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.
- 나. 국외위탁교육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다. 삭제 <2019. 5. 28.>